

##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폐지(안)에대한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2. 4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 4.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2. 18.(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)  
2001. 12. 26.(제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, 의견서 채택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개발과장 구자현)

가. 제안이유

- 사하구 장림동 1081-8번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은 1996. 6. 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, 신평·장림 공단내 피혁 가공 잔재물 및 오·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비료·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,
- 폐기물재생시설의 불완전 및 사업성 결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인 (주)동아단백자원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어 법원 경매 인수자인 (주)정광수산, (주)제이알램스킨에서 수산물가공공장을 설립코자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이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장림동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폐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4. 토 론 요 지 : 생략

5. 심 사 결 과 : 의견서채택

붙임 : 의견서 1부.

-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폐지(안)에 대한 -  
의 건 서

1. 도시계획시설 개요

가. 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

나. 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081-8번지

다. 용도지역 : 전용공업지역

라. 면적 : 1,452.2㎡

마. 용도 : 신평·장림 공단내 피혁가공 잔재물 및 오·폐수 슬러지  
재활용

2. 청취안에 대한 의견

- 대상시설이 협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폐지함이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 판단되나
-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인하여 신평·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피혁가공 폐기물의 처리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또한, 폐지 후 새로운 필요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다시 결정하고자 할 경우, 심각한 민원발생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.

2001. 12. .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